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장학금 신청자격 확대, 장학금 지급한도 상향, 지급한도 내 타 기관 장학금과 병급이 가능하게 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양양 및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확대(제14조 및 제17조)
- 장학금 지급한도액 상향 및 등록금 범위 내 타 기관 장학금과 병급 가능(제16조 및 제1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합 의: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구미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양양 및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한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의 신청 자격 확대, 지급한도 상향, 타 기관 장학금과 병급 가능성을 규정 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현행	개정안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새마을운동에 연속 2년 이상 봉사한 구미시 새마을 남·여지도자(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 지급 대상은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 ----- ----- <u>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및 새마을문고 지도자</u> ----- ----- ----- ----- ----- -----
1.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나.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또는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다. (생략)	1.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70점 ----- ----- “C”학점 ----- 다. (현행과 같음)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제14조는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확대를 위한 개정으로, 그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를 포함하고, 최근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수 감소에 따라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우등생장학생 학업성적 기준 완화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 새마을여성합창단 등 더욱 다양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추가 지원여부 및 그 적용 시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임. 또한, 장학금 지급 실적이 지금처럼 계속 줄어들 경우 기금의 성격을 변경 및 확대하여 새마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활용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1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며, 1인당 연간 최대 <u>100만원</u> 이내로 한다. <u><신 설></u>	제16조(장학금액) ① ----- ----- ----- --- <u>200만원</u> -----. ② <u>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학기당 등록금 총액 이내로 한다.</u>

- 안 제16조는 장학금 지급한도액 상향 및 등록금 범위 내 타기관

장학금과 병급 가능을 위한 개정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에서 2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2023년 기준
대학등록금이 690만원에 이르는 것을 참고하였을 때 장학금액을
상향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학기당 등록금 총액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타 기관
장학금(국가장학금 등)과 병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그 한도를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17조(신청 및 추천) 장학금은 <u>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장</u> <u>· 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 · 새</u> <u>마을문고구미시지부회장</u> (이하 “새마을단체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지도자가 시장에게 신청한다.	제17조(신청 및 추천) ----- <u>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장</u> <u>· 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 · 직</u> <u>장 · 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u> <u>의회장 · 새마을문고구미시지</u> <u>부회장</u> ----- -----.

- 안 제17조는 장학금 신청 및 추천 자격요건 확대를 위한 개정
으로, 신청 및 추천 대상자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를 포함
하여 폭넓은 새마을단체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18조(선정기준) ① ~ ③ (생략) ④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u>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 한다.</u>	제18조(선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한다.</u>

- **안 제18조는 타기관 장학금과 병급 가능을 위한 개정으로, 기존 선정기준의 중복지급 불가규정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 한다.”를 삭제하여 장학금 범위 내에서 타기관 장학금과 병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더욱 폭넓은 수혜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18조제4항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의 제한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적극적인 새마을운동 참여와 함께 장학금 대상 자녀의 모범적 학업수행 장려 및 다자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별표 (참고자료)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연도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명)

연도별		지 급 현 황			예산현황
		지급인원	지급액	계	
계		839	479,494	479,494	
2013년	상반기	60	36,468	74,775	일반회계80,000 (도18,500, 시61,500)
	하반기	63	38,307		
2014년	상반기	52	32,234	69,628	일반회계80,000 (도18,500, 시61,500)
	하반기	61	37,394		
2015년	상반기	48	28,330	55,956	일반회계60,000 (도13,500, 시46,500)
	하반기	47	27,626		
2016년	상반기	51	28,987	55,747	일반회계60,000 (도13,500, 시46,500)
	하반기	46	26,760		
2017년	상반기	47	26,322	52,644	일반회계60,000 (도13,500, 시46,500)
	하반기	47	26,322		
2018년	상반기	47	25,185	51,570	일반회계60,000 (도13,500, 시46,500)
	하반기	45	26,385		
2019년	상반기	41	22,975	38,510	일반회계27,000 (도11,500, 시15,500) 기금27,000
	하반기	28	15,535		
2020년	상반기	0	0 ※코로나로 인한 무상교육	17,745	일반회계18,000 (도9,000, 시9,000) 기금27,000
	하반기	30	17,745		
2021년	상반기	28	14,000	27,000	일반회계13,000 (도6,500, 시6,500) 기금15,000
	하반기	26	13,000		
2022년	상반기	22	11,000	22,419	일반회계13,000 (도6,500, 시6,500) 기금17,000
	하반기	23	11,419		
2023년	상반기	13	6,500(도비)	13,500	합계(기금)30,000 (도 6,500, 기금23,500)
	하반기	14	7,000(기금) ※전액 기금으로 지급		